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1995년 8월 10일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나. 제출일자 : 95. 7. 21

다. 회부일자 : 95. 7. 26

라. 상정 및 의결

○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95. 8. 9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95. 8. 9

2. 제안설명요지 (설명자 : 위생과장 조규동)

가. 제안사유

○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가 93년12월27일 및 94년8월11일 각각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되어, 94년11월8일부로 보사부 훈령 제632호로 간이급수지침이 폐지되고 공동급수시설 및 용달샘(약수터)관리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수질관련 모든 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토록 조정되어 본 조례 폐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허 면)

○ 본조례는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공동급수시설(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정호)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폐지조례로써 조례의 관련근거 법령의 개정으로 공동급수시설의 관리가 수도법 제3조9호 간이상수도로 규정되었고, 우리 구의 관련업무도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의 효율성이 없으며, 그동안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능률성이 제고 될 것으로 보아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위생과장 조규동)

- ▶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동급수시설이 몇개나 되는지?
- ▷ 간이상수도가 6개소, 공동정호가 3개소 설치되어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반대없음)

7. 첨부 :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1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94. 5. 17. 조례 제23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